광주지방고용노동청(공시송달)공고 제 2021-58호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이전 및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1. 9. 7.

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이한식	70.03.11.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 지원 종료 처리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	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	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상담일자에 방문하지 않고,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간 내 의견 제출하지 않음.	○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○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주소이전 및 소재불명	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농단길 32-11

4. 공고기간: 2021.9.7. ~ 2021.9.21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정읍센터 김경숙(Tel.063-530-750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